

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
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7.

발 의 자 : 허 영 · 김영환 · 윤후덕
김병주 · 박지혜 · 박 정
김성희 · 박상혁 · 이해식
이기현 · 최혁진 · 송기현
진성준 · 김문수 · 박지원
이재강 · 최민희 의원
(17인)

제안이유

현재 남북 간 방문, 물품 등의 반·출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 승인, 반·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남북 간 스포츠교류·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,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남북 간 방문, 스포츠물품 등의 반·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

류·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·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스포츠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통일부장관이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·조정하고,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의 특례로서 협력사업, 방문, 스포츠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여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.
- 마. 재정 지원,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,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스포츠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별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"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 "남한"이라 한다)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이 공동으로 개최·참가하는 경기대회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2. "스포츠물품등"이란 경기용품, 훈련장비,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 스포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,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.
3. "반출·반입"이란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반출·반입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남한과 북한의 왕래·접촉 및 남

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스포츠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(이하 "남북스포츠교류·협력"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)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의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
2.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·지도·협조
3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관련 법령·제도 개선 건의
4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남북스포츠교류협력 추진협의회) ①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·조정하고,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에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

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·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

2.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총괄·조정

3.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5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

2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⑥ 그 밖에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장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특례

제6조(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신고) 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. 신고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신고를 한 경우
2.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
4.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한 경우
5.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신고하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
6.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해칠

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

7.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

제7조(방문신고) 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방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증명서(이하 "방문증명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신고한 경우

2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

3.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

④ 그 밖에 방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반출·반입의 신고) 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스포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「남

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스포츠물품등의 품목,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·반입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신고한 경우
2.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
3.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

제3장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지원 등

제9조(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의 지원) ① 정부는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통관 절차의 간소화)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스포츠물품등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11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지원센터의 임직원 및 협회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4장 벌칙

제1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한 자
2.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
3.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스포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

제1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

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
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시행 이후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하
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